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 미 홍*·김 룬 희**

차 례

- I. 서론
- II. 녹색도시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녹색도시 조성 관련 현행 법·제도 현황
- IV.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안)
- V. 결론

【국문초록】

집중적인 에너지 소비처로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다양한 성장 동력을 보유한 도시는 녹색성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녹색도시 조성 관련하여 그간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제도적 측면에서 현행 존재하는 법제도의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자기 영역만을 규율하는 법제도, 분산되고 다기화된 주무관청, 계획요소별 개별법령 중심의 법제, 인센티브 제공 미흡, 지방의 자율적인 권한 미비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개정(녹색도시 추가), 국토계획법 중심의 녹색법제 통합, 개별법의 녹색성 강화, 녹색도시 조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의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주저자)

**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교신저자)

I. 서론

도시는 집중적인 에너지 소비처로서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이며 다양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녹색성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¹⁾. 최근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의 새로운 정책 실현의 장으로 녹색도시와 관련된 정책들과 성공 사례들이 널리 소개되고 있다²⁾.

국내에서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한 대표적인 제도적 성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의 제정 및 이에 의거한 녹색성장5개년계획 수립을 들 수 있다. 녹색성장5개년계획에서 정부는 '세계 일류 녹색 선진국 건설'을 위해 3대 목표 및 녹색성장 10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에너지 자립국가 및 저탄소 경제·사회의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국가 위상 정립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10대 추진방향 중 국토공간의 녹색화가 도시, 건축 및 교통의 녹색화를 포괄하는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국토와 도시, 건축 및 교통의 녹색화는 기존 도시의 관리와 재생, 신도시개발을 함에 있어 저탄소 공간구조를 구현하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및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따라 현재 3개의 녹색시범도시 조성, 녹색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한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등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법이 제정된 이후 장기적 법적 대응방안으로 여러 개별법(환경, 에너지, 건축, 교통관련법 등) 조항의 제·개정이 추진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 및 지속성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그간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제도적 측면에서 현행 존재하는 법·제도의 현황을 파악·분

1) 도시는 자구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의 60-80%를 소비하고 전체 CO₂ 배출량의 50% 가까이를 배출한다. 열섬효과도 농촌과 비교 시 3.5°C-4.5°C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차이는 10년마다 1°C씩 증가할 전망이다(OECD, 2009).

2) 선진국의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사례는 다음과 같다. 신도시 사례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보방(Vauban, Freiburg), 뮌헨의 뤼(Riem, München), 스웨덴의 함마르비(Hammarby Sjostad, Sweden) 등이 있고, 기존 도시 사례로는 호주 브리즈번(Brisbane, Australia), 멜버른(Melbourne, Australia), 시드니(Sydney, Australia), 캐나다 토론토(Toronto, Canada),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Spain), 미국 포틀랜드(Portland, USA), 볼더(Boulder, USA), 영국 런던(London, UK)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이은엽 외 4인, 「저탄소·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기법 연구」, 토지구획연구원, 2009 참조.

석하고 전문가 및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녹색도시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가 검토한 제도의 범위는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한 국내 관련 법령을 총 망라한다. 법적으로 상위 개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위 개념을 갖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을 비롯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 법안인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업시행과 밀접한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주거및환경정비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포함된다. 각 법안과 연계된 계획 및 지침도 검토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이외에 국토해양부 훈령인 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수립지침, 규칙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의기준에관한규칙, 녹색성장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으로 녹색도시 계획요소별(에너지, 건물, 교통, 물관리, 자원순환) 관련 법령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표 1 참조).

본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검토를 통해 녹색도시 관련 검토 법령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되 기존의 계획기법 위주의 선행연구에 추

[표 1] 녹색도시 조성 관련 검토법령 범위

구분	법률 위계				계획
	법률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조례	규칙	계획 및 지침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일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환경영향평가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해당 지역 녹색성장 5개년계획)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건축계획 도시개발편람 (도시개발법 연계)
촉진법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택지개발촉진법 연계)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연계)
개별법	* 에너지, 건물, 교통, 물관리, 자원순환 관련 법제				* 분야별로 연계된 각종 계획

가하여 제도적인 검토를 포함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검토 법령을 대상으로 녹색도시와 관련된 조항을 추출하여 현재의 법·제도 상황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사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자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관련 전문가는 연구원, 행정학자, 법학자를 포함시켰다. 또한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도시 조성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자를 인터뷰 대상에 포함하였다.

II. 녹색도시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 녹색도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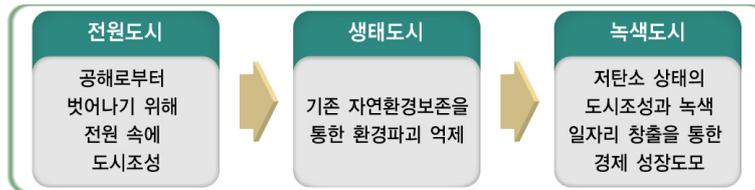
녹색도시의 기존의 전원도시, 생태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와 차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 핵심이다. 그렇다고 녹색도시가 기존의 생태도시가 강조하고 있는 자원 순환 및 생태 공간 조성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기존 요소에 누적적으로 다양한 계획기법들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녹색(green)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은유성, 다양성에 기인하는데, 온실가스 감축에 목표를 두는 도시라면 저탄소 도시(low carbon city)로 명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개념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그린시티(녹색도시)는 풍부한 녹지공간과 수변 공간 창출을 통해 도시 생태계 개선을 도모하고 개발사업 시 환경과 생태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관심을 두어왔다. 이러한 도시를 조성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훼손을 줄여주고 생물다양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들이 주요 관심 대상이었으며, 도시를 생태계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선형적 물질대사에 국한시켜 도시를 계획하는 접근방식을 취해 왔다.

최근 들어 녹색도시의 선형적 물질대사를 순환적 물질대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보존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며, 대체에너지를 활용하여 입력물(Input)과 산출물(Output) 사이에 순환적 신진대사 작용을 도모하는 도시체계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형 녹색도시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도시'라고 정의해 볼 수 있으

[그림 1] 녹색관련 도시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이미홍 외(2009:67)

며,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친화성 구현과 환경복원을 포함하고 이에 더하여 도시 내 저탄소 녹색기술 구현과 이를 통한 녹색고용창출을 담아내기 위한 도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담기에 현재 법·제도상에서 녹색도시 용어는 계획요소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또한 녹색도시는 ‘산업, 건축물, 수송 분야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흡수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공간의 기본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국토해양부 외, 2009).

2. 선행연구 검토

녹색도시 관련 선행연구는 도시계획차원과 제도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계획 차원의 연구는 화성동탄(2) 신도시, 검단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탄소배출 정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³⁾. 도시계획차원의 연구가 상당히 다양하게 배출되는 것과 달리 제도적 차원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김남철(2006)의 경우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관련되는 도시개발법제와

3) 대표적인 연구는 김홍배 외(2009), 오용준 외(2009), 이재준 외(2009), 인천광역시 외(2010), 윤용상 외(2011) 등이 있다. 도시계획 차원의 선행연구 정리 및 평가는 이미홍·김분화·조미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현행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11 참조.

환경법제의 내용 및 관련 정책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한상운(2009)은 녹색도시 구성 요소 중 건물을 중심으로 외국의 법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향후 한국의 저탄소생활기반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 대응의 방향을 도출하였다⁴⁾. 송동수(2009)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국토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법제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그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⁵⁾.

함태성(2009)은 기존 에너지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녹색성장의 등장 배경과 개념,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녹색성장기본법의 에너지 관련 주요 내용, 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기본법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⁶⁾. 조홍식 외(2009)는 환경법제의 관점에서 새로운 환경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성장법의 특징 및 내용을 살펴본 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특별법, 친환경상품법과 같은 기존 환경법령과의 조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⁷⁾.

- 4) 추가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등급표시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의 최저 기준을 명시하는 법률이 보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시 저소득층의 배려를 고려하여야 하며, 법적 의무부과에 한계가 있는 영역내지 범위서는 장기적 대응전략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세제혜택 등을 명시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5) 특히 교통물류체계의 법현황을 정리하고,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해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교통수요관리를 제시하면서 교통수단간 통합연계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물관리에 있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법령(하천정비사업, 댐건설사업, 농업용 조수지 증고, 농어촌개발사업, 수질개선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의 조정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생태하천 조성 및 하천환경 보전을 위해 '생태하천조성계획 지침'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 6) 그는 녹색성장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이고 이러한 녹색성장의 이념에 부합하는 에너지법제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녹색성장법 상 에너지 관련 사항을 추출하고 녹색성장법에 에너지기본법의 내용이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포괄하는 녹색성장 개념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의 장에 참여하여 에너지 관련 법제의 입법정당성과 민주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 7) 녹색성장법은 환경에 관한 종합계획법으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검토결과 기존 환경법령상의 제도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새로운 목표와 성장동력의 창출이라는 혁신적인 목표를 함께 추구함으로써, 환경법제 전체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전환 내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녹색성장법의 부칙을 통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총 13건의 법률을 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칙에도 불구하고 기존 환경법제와의 중복

이헌석(2010)은 녹색성장이 포괄하고 있는 환경보전,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통합의 원리가 국토이용법제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토이용법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⁸⁾. 장욱(2010)은 녹색성장법의 기본법상의 의미를 제시하고 몇 가지 비판점을 제시하고 수정되어야 할 사안을 정책적 제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⁹⁾.

마지막으로 김성수(2010)는 녹색성장법 제정이 환경법익 및 에너지 법익에 미치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을 법리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녹색성장법은 환경법익 보호 측면에서 개별적 환경요소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환경요소와 대조적인 인자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법익 요소를 조화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법익의 조화까지 시도하는 고도의 정책기본법이다. 이를 필자는 물, 기름, 불의 혼합체인 용광로로 비유하고 있다¹⁰⁾.

내지 상충 관계는 아직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환경법제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제도와의 미세 조정 없이 추진된 녹색성장법이 기존 규제체계의 상위에 갑자기 등장한 거대한 기본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는 아무리 그 방향이 타당하고 내용이 추상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규제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상충과 모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 기회에 관련 환경법제를 일괄하여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 8) 녹색성장법의 등장으로 국토이용법제는 기본법과 필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녹색국토 조성 및 녹색도시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건설법전(Baugesetzbuch: BauGB), 영국 건물 환경영향평가시스템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Assessment Method), 프랑스 환경그르벨법 등 해외 우수 입법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9) 그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법률형태는 사회 또는 시대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법의 성격에 부합하게 장기적인 목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색성장법은 경제법과 환경법이 결합된 형태로 경제법의 기본원리와 환경법의 기본원리가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실행력에 있어 한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녹색성장위원회가 법적으로는 녹색성장과 관련한 환경, 교육, 문화, 과학기술, 국토개발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에도 집행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 10) 환경법의 변화에 관한 긍정적 입장으로는 환경요소의 개별적 향상과 더불어 집합적 환경요소의 향상은 두 개의 요소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기후변화조약이나 녹색기본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또한 교육·홍보와 생활실천을 통하여 개인과 기업, 정부, 국영기업 등을 망라하여 개별적인 노력과 집합적인 환경침해 행위자의 노력을 총체적으로 실현시키려는 시각을 확인하는 긍정적인 점이 보인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입장은 종전의 장기적인 기본 계획의 틀이 일관

III. 녹색도시 조성 관련 현행 법·제도 현황

1. 관련 법·제도 선택 기준

녹색성장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겪는 연구 초기의 어려움은 검토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녹색국도, 녹색도시 뿐 아니라 녹색산업, 녹색일자리 등 관련 분야가 전체적으로 초기에 당면하는 어려움이다. 이는 녹색성장의 개념정의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인데, 특히 녹색도시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에 적용할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된다. 따라서 법제 연구에 있어서도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이 무엇인가를 확정하는데 논란이 있다(한상운, 2009:259; 고문현, 2010:259). 결과적으로 법·제도 현황 검토를 위해서는 선택기준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녹색도시 관련 법제를 추출하기 위해 법제처(2010)의 연구를 차용하였다. 법제처(2010)는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와 연계하여 녹색법제의 범위를 <표 2>와 같이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방향에 맞춘 녹색법제의 대분류는 16개이고,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물 관리, 생태계 보전, 녹색국도, 녹색건물, 녹색교통, 자원순환 법제로 추출할 수 있다. 전체의 거의 절반 이상이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녹색도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에너지 부분의 원자력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법제와 물관리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생태계 보전의 자연환경보전,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광진흥법 및 자원순환의 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산업단지와 물류와 관련된 법·제도도 배제하였다.

이러한 바탕에서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업 및 시설 설치 관련 법안들을 추가하기로 하는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 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이 결여될 것에 대한 우려이다. 무엇보다 총론만 부여하고 각론은 말단 행정관료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다 보면, 말단관료는 상급부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시간과 국가의 예산만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산업과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결과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표 2] 분야별 녹색성장법제 체계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법제	은실가스 법제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권 거래제법(안) 등
	산림조성 법제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에너지 법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원자력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기후변화 적응 법제	기상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연안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물 관리 법제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산업 진흥법안 등
지속가능 발전 및 녹색생활 법제	생태계보전 법제	지속가능발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녹색국토 법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녹색건물 법제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녹색교통 법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녹색자동차 법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녹색소비 법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교육진흥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등
	녹색농림수산 법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친환경농업육성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녹색경제 성장 법제	녹색기술 법제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녹색경영 법제	산업발전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자원순환 법제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녹색경제 법제	조세특례 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

출처 : 법제처, 2010. 녹색성장 법제(1)

2. 법제도 현황 개괄

현황 검토를 위해 선택된 녹색관련 법제들을 분류하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법은 최상위 법으로 인정된다. 이는 동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녹색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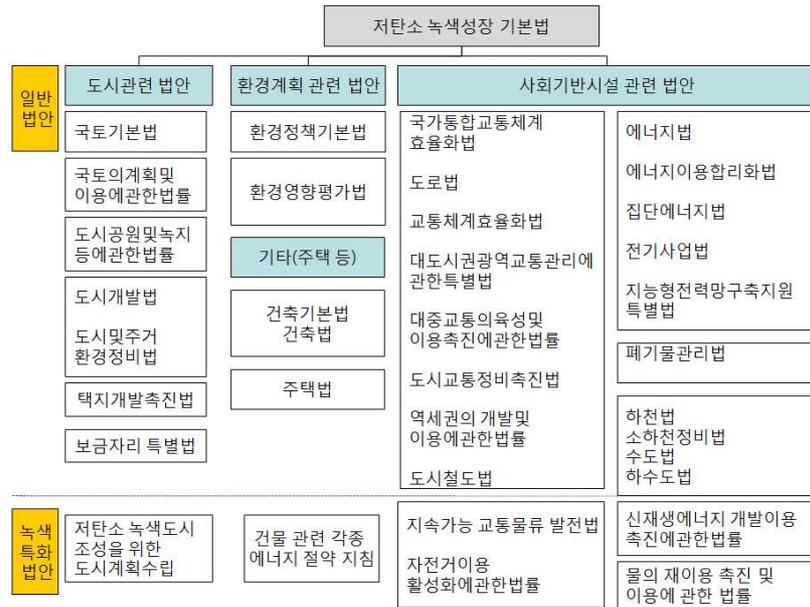
하위법령들의 카테고리는 크게 국토관련, 환경관련, 사회기반시설, 주택을 포함한 기타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 녹색성장 정책 이후 국토, 사회기반시설별로 녹색에 특화된 법안이 나타나는데 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수립(국토부 훈령),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물의재이용촉진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국토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녹색특화법안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녹색도시와 연계되지만, 일반 법안의 경우 일부만이 녹색도시와 연관되기에 관련 조항을 분석 정리하였다.

추가적으로 녹색도시 조성은 다른 여타 법제와 달리 공간에 구현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녹색성장법은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된다. 사회기반시설 별로 공원을 규정하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은 공원녹지계획과 연계되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연계된다. 또한 공간에 구현하다보니 공간의 위계별로 연계성이 강하다. 따라서 관련법과 계획을 공간위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현행 녹색도시 관련 법제 현황(계획연계-공간위계별)

구 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 5개년 계획)/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지역 녹색성장 계획)			
	국도·지역·도시 관련	사회기반시설(SOC)	자원 및 환경관련	기타 (주택 관련)
전국	국도기본법 (국도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대중교통기본계획) 도로법(도로정비계획) 철도건설법(국가철도망구축계획,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국가환경종합계획) 하천법(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수도법(전국수도종합계획) 하수도법(국가하수도종합계획) 지하수법(지하수관리기본계획) 에너지법(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상시 에너지 공급 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광역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광역도시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하천법(하천정비기본계획)	
시도	국도기본법(도종합계획)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공원녹지계획, 도시녹화계획)		환경정책기본법(도종합계획)	
시군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공원조성계획)		환경정책기본법(시군단위계획) 소하천정비법(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역·구역·단지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시재정비기본계획) 주택법(시·도 주택종합계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예정지구택지개발계획) 보급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국인입대주택단지조성사업)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시설물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도로법(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건설사업) 철도건설법(철도 건설, 역세권 개발사업) 도시철도법(도시철도 건설, 역세권 개발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하수도법(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사업법(전기설비설치사업)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축기본법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건축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공원시설 설치사업)
녹색특화 법령 및 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부 훈령)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지속가능교통물류기본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물순환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도시개발업무편람 보급자리주택업무편람

[그림 2] 녹색도시 관련 법제도 현황



IV.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안)

지금까지 녹색도시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도시 관련 법·제도들이 법 상호간 연계성 보다는 자기 영역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도시 관련 법제는 계획요소별, 사업추진단위별, 부처별로 규정된 개별법 중심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다보니 복잡하고 상호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체계적인 법령정비 및 법령 상호간의 관계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일정한 원칙과 방향 없이 분야별로 각각의 자기 영역만을 규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녹색성장법이 제정되었으나, 기본법에 녹색도시 관련 조항들이 상당히 약하게 제시됨에 따라 여전히 이러한

분절된 법령들은 자기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녹색도시의 실현을 지연시키고 있다.

둘째, 녹색도시 관련 법·제도들의 주무관청이 분산되고 다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복잡한 법제의 존재에서 비롯된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겠지만, 현재 관련 주무부서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하다. 녹색성장법의 주관 부서이자 강릉 녹색모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경우 전국적으로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기존도시의 녹색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앙부처 간 협의와 실행력의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시범도시나 지식경제부가 주관할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에서도 논쟁이 될 사안이다.

셋째, 계획요소별 개선을 넘어선 통합된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계획요소별 제도개선도 분명 의미가 있으나,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녹색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녹색도시 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녹색도시의 구현을 빨리 진행시켜야 할 부처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건물, 교통, 에너지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계획요소는 차치하더라도 폐기물, 녹지, 물순환 등의 계획요소 논의는 여전히 과거 생태도시에 머물러 있고 탄소감축과 녹색산업 창출이라는 녹색도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단지계획에서의 녹색화의 모습은 여전히 모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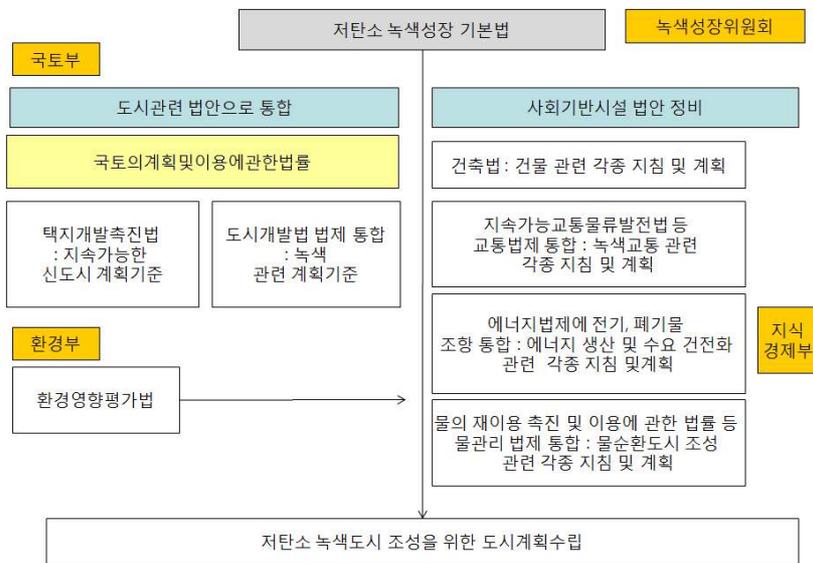
넷째,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하다. 새로운 녹색도시 관련 패러다임을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사업시행자의 비용분담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수단들이 체계적으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녹색도시 건설은 계획요소별이든 전체 차원이든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작업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러한 비용 증가를 사업시행자가 주로 부담하거나 소규모의 재정지원이 있을 뿐이다. 이는 소비자의 비용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녹색의 일반적 속성은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 여러 주체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녹색도시 건설의 실행력 저하를 들 수 있다. 실질적인 녹색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의 노력이 절실하다. 녹색도시는 지역 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게 건설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및 지역 계획에 있어서 그러한 노력이나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업시행자들이 주로 참고하는 지침에 있어서도 녹색도시 계획요소의 도입과 관련된 노력은 보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제도와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정부 주도의 화려한 계획과 실제로 조성되는 녹색도시의 현실이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녹색도시 조성 관련 현행 법률 검토에서 제시되었던 복잡다기했던 법률은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녹색도시 관련 법제의 정비(안)



1. 기본법 수정 : 녹색도시 관련 내용 추가

첫째, 녹색도시 관련 조항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녹색도시는 녹색성장법 제51조 녹색국토의 관리 파트에 하나의 시책인 ‘에너지·자원 자립형 탄소중립도시 조성’으로 반영되어 있다. 녹색도시가 녹색국토의 한 분야이기는 하나 도시인구 비중이 90%가 넘는 현 상황에서 녹색도시는 녹색국토와 더불어 단독으로 중요한 정책단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녹색건물과 녹색교통, 물관리 등 도시의 주요 계획요소가 제52조(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관리), 제5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54조(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단독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녹색도시 분야의 배제는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로 녹색도시의 확대 및 조성과 관련된 법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본법으로서 향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녹색성장5개년계획에 대한 법적인 지위 부여 및 인센티브에 대한 방향제시이다. 이는 동법 제3조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는 이념에도 부합하는 사안이다.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민간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토계획법 중심으로 녹색법제 통합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은 목적과 수단이 상이함에 따라 법제 및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존재를 고려하기 어렵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에너지기본법,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기본법 수준에서 보더라도 녹색과 관련된 법·제도는 너무 많고 중첩되어 있다. 물론 제도적 입장에서 가외성(redundancy)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녹색관련 제도는 이를 넘어선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토계획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제도개선 방안은 통합화가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과 녹색성장법과의 우선적 지위에 관한 다소의 논쟁은 존재하지만, 녹색도시와 같은 특수

사안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국토 전반의 일반적인 사안을 규정하는 기본법에 우선한다고 볼 때, 녹색도시와 관련된 사안은 녹색성장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도시 조성 실행측면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이 녹색도시 제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중심으로 녹색법제가 통합이 되고 환경규제는 도시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과도한 개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은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공간계획체제 수립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중심으로 녹색법제를 통합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환경법제와의 통합이고, 두 번째는 개발법안 자체의 통합방안이다.

먼저 환경법제와의 통합은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녹색성을 담보하기 위한 녹색 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국토기본법 제5조2항과 국토계획법 제3조2항에 의거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녹색도시 조항으로 변화시켜 기존도시의 녹색성을 담보해 나가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내용을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로 녹색도시 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녹색국토조성을 위한 국토평가제도 도입 시도가 구체화되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발법안 자체의 통합은 도시개발법의 통합 및 녹색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가칭)도시재생활성화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저탄소·녹색재생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포괄하기로 하였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또는 공공시행 개발사업의 경우 탄소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등 개발사업 시 탄소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러한 계획이 도입될 경우 기존 재정사업의 위축 등 영향력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차원에서 특화시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기는 않지만, 이러한 방향성은 바람직하다. (가칭)도시재생활성화법이 현실화된다면, 기존 도시의 녹색성은 이 법에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개별법의 녹색성 강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개별법은 실질적인 녹색도시 구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제도개선 방안은 건축, 교통, 에너지, 물 분야로 법제를 단순화하는 방안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교통 및 에너지 관련 법제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녹색교통은 녹색건축과 더불어 녹색도시 조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녹색으로 특화된 법률적 의미로 보아서는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이 통합의 모범이 될 수 있으나, 본 법은 물류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토지이용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녹색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 녹색교통과 관련해서 부각된 분야 중 하나는 자전거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모범도시의 선정 및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도로의 일부분으로 기존 도로와의 연계 및 안전성이 중요한바 도로 관련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와 협의 및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폐기물과 수자원의 에너지화에 따른 관련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 자원순환형 사회의 추구 및 폐기물의 에너지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전략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폐기물의 에너지화 관련 업무와 법령을 통합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녹색도시 조성 관련 인센티브 확보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 및 인센티브 조항을 분석한 결과, 규제의 경우 녹색성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녹색건축물과 관련해서 등급제를 향후 전체 건물에 적용할 예정이고 녹색 건축물과 관련해서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 일부 재정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등 국토관련 법제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도시의 지속성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고 녹색을 특화로 한 시범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있어서도 훼손지 복구와 관련하여 보전부담금을 재

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수준이다. 도시재생의 경우 비용부담과 관련해 도시개발법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이에 따른 소비자에게로의 비용전가 문제와 녹색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5. 거버넌스 확대로 실행력 확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의 실행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단위에서는 우선적으로 녹색도시 조성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부문별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개별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의 취지와 목적, 계획지표, 계획기간 등 계획 상호간의 불일치가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녹색도시 조성이 시급한데 이러한 노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개성 있는 도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국토계획법에 의거하여 녹색도시를 평가할 경우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한다면 정책수단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이러한 차별화 노력에 가중치를 부과하여 향상시키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도시 조성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외형적인 녹색도시의 구현에 불과할 수 있다. 시민들이 녹색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녹색도시가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촉진법이나 상당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녹색도시의 의미를 고려할 때 좀 더디기는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과 향후 통합될 도시개발법제와 지역개발법제에 녹색성을 부과하고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모범에 반영하는 것이 녹색도시 조성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¹¹⁾.

V. 결론

지금까지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도시의 녹색성 강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포괄하여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연구 초기에 이미 신도시에 비해 기존도시의 녹색성 강화와 관련된 법·제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현재 (가칭)도시재생활성화법 입법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녹색과 관련된 연구수준과 조항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녹색성 관련 조항 연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에는 일본 환경모델도시 선정 시에 도입된 기존 도시 녹색화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연구가 좋은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녹색성 강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및 관련 지침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계획법 중심으로 환경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실천(안)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선진사례를 볼 때, 계획시스템의 실효성 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계획요소별 지침 개정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환경그르벨법은 합리적 절차를 포함하는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단위에서의 실행력 확보방안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녹색성장 관련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실행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따라서 일본 지방정부들이 시행하고 있는 협정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단위의 녹색도시 관련 통합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민간 사업시행자를 포함하여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

11) 현재의 법규로도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127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127조2항에서는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비 매칭조항을 완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과 사업시행자의 실행력을 높여야만 계획에서 뿐 아니라 현실에서 녹색도시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11. 8. 4.	심사일 : 2011. 8. 18.	게재확정일 : 2011. 8. 22.
---------------------	--------------------	----------------------

참고문헌

- 김남철,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30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 김성수, “녹색성장기본법과 환경·에너지 법익”, 「한국의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법원리」, 대한변호사협회, 2010.
- 법제처, 「녹색성장 법제(I)-저탄소 녹색성장과 법제적 대응」, 2010.
- 송동수,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제3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이미홍 외 5인,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 저탄소 녹색국토·녹색도시 조성방안」, 토지주택연구원, 2009.
- 이미홍, “녹색성장형 공간구축 관련 쟁점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6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이미홍·김분화·조미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현행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11.
- 이은엽 외 4인, 「저탄소·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기법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09.
- 이현석, “녹색성장법에 따른 국토이용법제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4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 장 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토지공법연구」 제4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 조홍식·황형준,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제3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 한상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3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 함태성,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제36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Abstract]

A Suggestion on the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Green City

Lee, Mi-Hong·Kim, Ryoony-Hee

Urban plann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ields in green growth policies because citizens consume huge amount of energy and there are various dynamic forces for green growth in cities at the same time. Accordingly, this study does not only aim at analyzing current legal situation but also presenting alternatives in terms of institutional framework. The results show several problems: fragmented law and authorities, poor incentives, and inadequate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s.

Sever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The concept of 'green urban planning' should be included in the Green Growth Act. 'A Greenness' should be also integrated to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reinforced in each acts. In addition, national government needs to provid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entities with various incentives to enhance institutional fea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national government to propose act amendments for green urban planning and provide local government with various types of incentives.

주 제 어 녹색도시,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법제, 환경법제

Key Words Green City, Climate Chang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erritory
legislation, Environment legislation